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48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4. 5. 27.
4. 회부일자 : 2024. 5. 30.

##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⑤=①+②
		소계②=③-④	조성액③	사용액④	
합 계	1,800,336,008,066	25,544,377,887	282,702,802,882	257,158,424,995	1,825,880,385,95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15,169,407,300	24,991,576,880	31,818,230,000	6,826,653,120	140,160,984,180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833,092,480	△2,833,092,480	31,548,950	2,864,641,430	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1,209,504,428,685	△193,399,862,929	41,800,022,181	235,199,885,110	1,016,104,565,75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17,685,370	1,985,040	1,985,040	0	419,670,410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465,099,846,540	200,563,178,190	200,563,178,190	0	665,663,024,730
서울특별시학교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7,311,547,691	△3,779,406,814	8,487,838,521	12,267,245,335	3,532,140,877

####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8,258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1조 8,003억 3천 6백만원) 대비 1.4%(255억 4천 4백만원) 증가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0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401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1,151억 6천 9백만원) 대비 21.7%(249억 9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20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8억 3천 3백만원에서 전액 감소한 0원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161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1조 2,095억 4백만원) 대비 16.0%(1,933억 9천 9백만원) 감소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20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4억 1천 8백만원) 대비 0.5%(2백만원) 증가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20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6,656억 6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4,651억 원) 대비 43.1%(2,005억 6천 3백만원) 증가하였음.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20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35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73억 1천 2백만원) 대비 51.7%(37억 8천만원) 감소하였음.

## 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 가. 주요내용

[표-1] 기금 내역

(단위: 백만원, %)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증감률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115,169	24,992	31,818	6,826	140,161	21.7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0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401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1,151억 6천 9백만원) 대비 21.7%(249억 9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 나. 검토의견

###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sup>1)</sup>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 2023회계연도 동 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6억 9천 1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77억 1천 7백만원, 예치금 회수 974억 5천 2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11억 2천 7백만원이며,
  - 동 기금의 지출은 신청사건립 68억 2천 7백만원, 예치금 1,334억 6천 3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9천 7백만원임.

### 2) 수입결산

- 2023회계연도 동 기금의 수입액은 1,469억 8천 7백만원으로 수입 계획액 1,489억 4천 2백만원의 98.7%임.

## [표-2] 수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운용계획(A)	결산액(B)	증감(A-B)	증감사유
소계	148,942	146,987	1,955	
이자수입	834	691	143	금리 인하에 따른 정기예금 미해지
전년도이월금	17,717	17,717	0	
예치금회수	97,452	97,452	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2,939	31,127	1,812	이자수입으로 조성액 확보 추진

1) 금년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가 개정되어 조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기금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변경되었음.

○ 동 기금의 수입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자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서 수입계획액과 수납액(결산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자수입은 수입계획 8억 3천 4백만원의 82.9%인 6억 9천 1백만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금리 인하 상황에서 만기일이 도과한 정기예금의 이율 유지를 위해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약정에 따라 만기 경과 후에도 해지 시까지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지만,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금리」 누적 변동률이  $\pm 3\%$  이상일 경우 이율은 변동되는바<sup>2)</sup> 굳이 정기예금 재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수납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표-3] 동 기금 정기예금 예치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일	만기일	이율	예치액
2022-12-14	2024-01-31	3.67%	5,927,675
2023-08-10	2024-03-08	3.35%	15,700,000
2022-12-14	2023-03-14	3.67%	13,800,000
2022-12-14	2023-03-14	3.67%	19,200,000
2023-01-12	2023-04-12	4.00%	4,700,000
2023-01-12	2023-04-12	4.00%	10,108,882
2023-01-12	2023-04-12	4.00%	20,912,700
2023-01-12	2023-04-12	4.00%	11,200,000
2023-02-10	2023-05-10	4.00%	1,700,000
2023-02-10	2023-05-10	4.00%	4,500,000
2023-02-10	2023-05-10	4.00%	5,300,000
2023-03-02	2023-06-02	4.00%	10,000,000
2023-04-17	2024-04-17	3.38%	15,427,445
계			138,476,702

2) 금고의 이율 변경은 금고 약정서에 따라 매일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금리」의 누적 변동률이  $\pm 3\%$  이상일 경우, 동 변동률만큼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다음달 10일부터 적용됨.

-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입은 계획 대비 18억 1천 2백만원이 적은 311억 2천 7백만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자수입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입계획 대비 감소액보다 적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단순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낮아 계획 대비 감소된 것으로 사료됨.

### 3) 지출결산

- 2023회계연도 동 기금의 지출액은 1,402억 9천만원으로 지출계획액(1,489억 4천 2백만원) 대비 86억 5천 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사업비 지출액이 계획 대비 486억 4천 7백만원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6억 9천 7백만원이 발생함.

[표-4] 지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운용계획(A)	결산액(B)	다음연도 이월액	증감(A-B)	증감사유
소계	148,942	140,290	6,697	8,652	오염토 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후속공사 미집행
신청사건립	55,474	6,827	6,697	48,647	오염토 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후속공사 미집행
예치금	93,468	133,463	0	△39,995	오염토 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후속공사 미집행

- 이와 관련하여 신청사 건립 사업비를 살펴보면, 지출계획현액 554억 7천 4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12.3%인 68억 2천 7백만원에 불과함.

[표-5] 2023년 '기관운영(신청사 건립 사업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항목	지출계획 금액 (A)	전년도 이월액(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D)	다음연도 이월액(E)	집행잔액 (F=C-D-E)
설계비	13,784	0	13,784	0	0	13,784
시설비	36,126,704	17,717,532	53,844,236	6,799,305	5,817,258	41,227,673
감리비	1,471,000	0	1,471,000	0	880,224	590,776
부대비	144,826	0	144,826	27,348	0	117,478
합계	37,756,314	17,717,532	<b>55,473,846</b>	<b>6,826,653</b>	6,697,482	41,949,711

○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의 사유를 ‘오염토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오염토는 2022년 12월에 발생하였고 2023년 4월에 오염토 반출 정화공사가 실시되었는바(공사기간 1년 예정),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의 순차적 지연에 따른 사업비의 대규모 불용 발생을 2023년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에 동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대폭 조정했어야 하나 이를 방치하였고, 이를 금번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을 통해 해소하려 함.

- 이는 적시에 기금 계획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동 기금 규모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이 실제 기금 규모보다 축소되어 운용되는 효과를 야기하는 바,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동 기금에 대한 운용 및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동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적정한 지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사

업추진이 지연되어 지출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기금의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 사유인 이월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기금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3.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가.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6천 5백만원임.

[표-6]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내역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2023	2,833,092	△2,833,092	31,549	2,864,641	0

####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교육 및 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에 설치되었음.

- 2023회계연도 동 기금의 조성액은 지난 2023년 4월 3일 동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 이자수입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28억 3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 28억 6천 5백만원이 2023년 4월 3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세입 조치가 완료되었음.

####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가. 주요내용

##### [표-7] 기금 내역

(단위: 백만원, %)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증감률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1,209,504	△193,400	41,800	235,200	1,016,105	△16.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161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1조 2,095억 4백만원) 대비 16.0%(1,933억 9천 9백만원) 감소하였음.

##### 나. 검토의견

#####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기금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교육시설 개축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2023회계연도 동 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398억 2천 4백만원, 기

타수입 19억 7천 6백만원, 전년도이월금 1,371억 9백만원, 예치금 회수 1조 723억 9천 5백만원임.

- 동 기금의 지출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305억 2천 7백만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1백만원, 민간투자사업상환 1,046억 7천 2백만원, 예치금 1조 161억 4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 2) 수입결산

- 2023회계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액은 1조 2,513억 4백만원으로 수입계획과 수납액(결산액)이 동일하여 결산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표-8] 수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운용계획(A)	결산액(B)	증 감 (A-B)	증감사유
소계	1,251,304	1,251,304	0	
이자수입	39,824	39,824	0	
기타수입	1,976	1,976	0	
전년도이월금	137,109	137,109	0	
예치금회수	1,072,395	1,072,395	0	

## 3) 지출결산

[표-9] 지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운용계획(A)	결산액(B)	증 감 (A-B)	증감사유
소계	1,251,304	1,251,304	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37,109	130,527	6,582	건설비 사후정산 잔액
위원회운영	2	1	1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잔액
민간투자사업상환	106,118	104,672	1,446	BTL 정부지급금 지급잔액
예치금	1,008,075	1,016,104	△8,029	

- 2023회계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지출액은 1조 2,513억 4백만원으로 지출계획과 지출액(결산액)은 동일함.
- 이 중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지출계획액 1,371억 9백만원은 학사일정에 따라 겨울방학 중 공사(석면 해체 및 냉난방 개선) 시행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2022회계연도 동 기금에서 이월되었던 것으로, 집행잔액 65억 8천 2백만원은 공사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치금은 결산액이 반영되어 계획보다 증가하였음.
- 한편 ‘위원회운영’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비록 금액은 적으나 매년 운용계획 대비 집행율이 저조한바, 향후 지출계획 수립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표-10] ‘위원회 운영’ 불용률

(단위: 천원)

구 분	운용계획(A)	결산액(B)	집행률(B/A)
2023	2,400	720	30.0%
2022	2,400	560	23.3%

## 5.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 가.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억 2천만원임.

[표-11] 생태전환교육기금 내역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감률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2023	417,685	1,985	1,985	0	419,670	0.5

나. 검토의견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22년도에 설치되었음.
- 2023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이자수입 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4억 1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기금은 서울시의회에서 운용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기금에 근거한 예산집행이 중단되었고, 이후 대법원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효력 정지 결정으로<sup>3)</sup> 기금 폐지를 수반하는 조례 폐지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별도 사업비 지출 없이 재무 활동만 전개되고 있음.

3) 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대법원 2023쿠10, 2023.10.17.) 관련

**[표-12]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추진 개요**

일자	주요 내용
2023. 5. 30.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806호)
2023. 6.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회부 및 입법예고 진행
2023. 7. 3.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2023. 7. 5.	조례안 본회의 심사·의결
2023. 7. 6.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 (시의회 → 교육청)
2023. 7. 26.	조례안 재의 요구 (교육청 → 시의회)
2023. 9. 15.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재의결
2023. 9. 18.	확정조례 이송 (시의회 → 교육청)
2023. 9. 27.	폐지조례 의장 공포
2023. 10. 4.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 (재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포함)
2023. 10. 17.	대법원 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

## 2) 수입결산

- 2022회계연도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수입액은 2백만원으로, 당초 수입 계획액과 동일함.

해당 수입액을 구성하는 이자수입은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2조 제1항제2호에4) 따른 수익금으로서 결산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 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자 수입이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1천 8백만원 대비 0.48% 수준인 2백만원에 불과해 금고은행이 정한 예금상품별 수신금리에5)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4)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서울시의회 요구자료(요구번호 2024-1032번), ‘금고은행(NH농협은행)의 예금상품별 수신금리 현황(2022.10. ~ 2023.12.)’ (제출일 2023.6.5.) 참조.

- 이처럼 낮은 기금 운용 수입은 기금 관리 방식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금고은행 간 약정을 통해 설정된 수신금리 및 운용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운용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생태전환교육기금의 기금운용관은 대법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결정되기 전까지 기금 관리 전반에 있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3) 지출결산

- 2022회계연도 생태전환교육기금 지출액은 4억 2천만원으로 당초 지출계획액과 같고, 예치금 4억 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결산상 별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6.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 가.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656억 6천 3백만원임.

[표-13]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465,100	200,563	200,563	0	665,663

## 나. 검토의견

###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동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수입의 불안정성 등을 대비하여 서울시교육청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00억원, 이자수입 5억 6천 3백만, 예치금회수 4,651억원을 포함한 6,656억 6천 3백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예치금 6,656억 6천 3백만원임.

### 2) 수입과 지출 결산

- 2023회계연도 동 기금의 수입액은 6,656억 6천 3백만원이며, 이는 당초 수입계획액과 동일함.
- 동 기금 수입의 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수입계획과 수납액이 동일하여 결산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2023년도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월 기준 3.50%임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의 이자수입은 수입계획 현액 6,656억 6천 3백만원 대비 0.08%인 5억 6천 3백만원에 불과한바, 이는 금고 약정에 따라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은 만기일 또는 해지일에 지급받을 수 있고 동 기금의 정기예금 계좌 만기일은 모두 2024년이기에 2023년 기금의 이자 수입이 낮은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변경 조항을 살

펴보면, 정기예금의 경우 현행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하여 누적 변동률이  $\pm 3\%$  이상일 경우 금리가 변동되고, 2023년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의 경우 2024년보다 높은 이율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동 기금의 예치 기간을 2023년 내로 조정하였다면 이자 수익은 크게 증대되었을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 국내·외 경기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예치 기간을 설정하는 등 기금 운용에 있어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2024년 금고 약정시에는 예금종류별 가산금리 적용 방안, 누적 변동률 적용 기준 등 기금 수입액에 적합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변경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책사업 지출액의 20% 이하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지방기금법」 제11조6), 일반 예산과는 달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담보하고 있음.

---

6)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에 금번 이자수입 결산액(5억 6천 3백만원)은 당초 이자수입 계획액(5억 5천 3백만원)<sup>7)</sup>보다 1천만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정책사업 지출계획<sup>8)</sup> 대비 0.002% 증액에 불과한 바, 기금 결산보고서의 적시만으로 변경 가능한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3항<sup>9)</sup>에 해당하는 요건 발생 시 지출이 가능한바, 2023년도에는 관련 요건이 발생되지 않아 수입액 전액이 지출액의 예치금(6,656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표-14]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운용계획(A)	결산액(B)	증 감(A-B)
수입	소계	665,663	665,663	0
	전입금	200,000	200,000	0
	예치금회수	465,100	465,100	0
	이자수입	563	563	0
지출	소계	665,663	665,663	0
	예치금	665,663	665,663	0

- 7)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을 3차례 변경하였고, 1차 변경의 이자수입은 257억 2천 4백만원, 2차 변경의 이자수입은 5억 5천 3백만원, 3차 변경의 이자수입은 5억 6천 3백만원임.
- 8)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의 지출금액은 665,653백만원임.
- 9)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② (생략)
-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7.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 가. 주요내용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5] 기금 내역

(단위 : 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소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7,311,547,691	△3,779,406,814	8,487,838,521	12,267,245,335	3,532,140,877

### 나. 검토의견

#### 1) 기금결산 총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10)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 등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같은 법 제54조11)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임.

- 2023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73억 1천 2백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로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영한다.

\*공제회 : 같은 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만원)보다 37억 7천 9백만원 감소한 35억 3천 2백만원이며 당해연  
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액은 각각 157억 9천 9백만원임.

[표-16] 공제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항 목	계획	결산	증감액	증감 비율	항 목	계획	결산	증감액	증감 비율
합 계	15,826	15,799	△27	△0.2	합 계	15,826	15,799	△27	△0.2
전입금 및 보조금	0	0	0	0.0	비용자성 사업비	10,771	10,610	△161	△1.5
예치금	7,311	7,311	0	0.0	인력운영비	1,525	1,450	△75	△4.9
이자수입	283	244	△39	△13.8	기본경비	219	207	△12	△5.5
기타수입 (공제료 등)	8,232	8,244	12	0.1	예치금	3,311	3,532	221	6.7

## 2) 수입결산

○ 2023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납액(수입결산액)은 15  
7억 9천 9백만원으로, 수입계획(158억 2천 6백만원) 대비 2천 7백  
만원(0.2%)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치금 73억 1천 1백만원과 당해연  
도 기금 조성액(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84억 8천 8백만원으로 구성  
됨.

○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중 공제료 수입은 수입계획(73억 3천 9백만  
원) 대비 2억 2천 2백만원(3.0%) 증가한 75억 6천 1백만원이고,  
이자수입은 수입계획(1억 7천만원) 대비 7천 4백만원(43.5%) 증가  
한 2억 4천 4백만원임.

또한 공제료 수입을 제외한 기타 수입은 수입계획(6억 9천만원) 대  
비 7백만원(1.0%) 감소한 6억 8천 3백만원으로, 교육활동참여자공  
제료 1천 6백만원, 학교폭력구상금회수 1억 2천 3백만원, 소방수익  
금 5억원, 법인세환급금 4천 4백만원 등으로 구성됨.

[표-17]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계획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2022년도 수입액
합 계	14,702	15,826	15,799	15,799	99.8%	15,827
전년도 이월금 (사고 등)						
예치금회수	6,503	7,311	7,311	7,311	100.0%	8,472
이자수입	170	283	244	244	86.2%	100
소 계	8,029	8,232	8,244	8,244	100.1%	13,440
기타 수입						
소 계	7,339	7,561	7,561	7,561	100.0%	6,801
공제료 수입	유치원	197	198	198	100.0%	192
	초등학교	2,071	2,041	2,041	100.0%	1,772
	중학교	2,106	2,051	2,051	100.0%	1,964
	고등학교	2,846	3,070	3,070	100.0%	2,711
	기타학교	98	180	180	100.0%	143
	배움터지킴이	21	21	21	100.0%	19
소 계	690	671	683	683	101.8%	454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	70	16	16	16	100.0%	191
학교폭력구상금회수	102	111	123	123	110.8%	103
소방수익금	500	500	500	500	100.0%	160
법인세환급금	18	44	44	44	100.0%	0
잡수입	0	0	0	0		0

○ 2023년도 공제료 수납액은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가<sup>12)</sup> 상승 및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배움터지킴이의 실제 가입 인원수 오차로 수입계획(73억 3천 9백만원)대비 2억 2천 2백만원(3.0%) 증가한 75억 6천 1백만원임.

- 이와 같은 공제료 수입계획과 수입결산의 차이는 공제회에서 수입계획을 수립할 당시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학생에 대한 예상치를

12) 학생 1인당 공제료

(단위 : 원)

회계연도	유	초	중	고	평균
2023	3,200	5,350	10,300	14,440	8,323
2022	2,940	4,510	9,550	12,700	7,425
2021	2,530	4,400	9,350	11,550	6,958

통보받아 작성이 되나, 이를 제외한 개별 납부학교<sup>13)</sup>는 공제회 자체적으로 학생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산출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

- 특히 특수학교, 방송통신중, 각종학교 등의 기타학교의 경우 수입계획 대비 실제 가입인원 수 오차율이 매년 큰 폭을 나타내는바,

2021년 기타학교의 경우 실제 가입 인원수(16,719명)는 수입 계획 당시 인원수(13,519명) 대비 23.7%(3,200명) 많았고, 2022년에는 실제 가입 인원수(16,156명)가 수입 계획 당시 인원수(9,733명) 대비 66.0%(6,423명), 2023년에는 기타학교의 실제 가입 인원수(15,340명)가 수입 계획 당시 인원수(4,530명) 대비 238.6%(10,810명)나 증가되었음.

- 비록 공제료 수입이 계획 대비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공제료 가입 인원수 추계에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바,

서울시교육청 및 공제회는 학교 종류 및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 추세, 다양한 교육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료 수입액과 결산액의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13) 교육청 일괄납부 대상 : 교육청에서 학생수 산출하여 일괄납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육청 일괄납부 제외 :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재학생수만큼 납부

- 국립학교,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사립국제중학교, 사립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표-18] 공제 가입 인원수 산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계획 (A)	결산 (B)	증감 (B-A)	계획 (A)	결산 (B)	증감 (B-A)	계획 (A)	결산 (B)	증감 (B-A)
	예측 인원수	가입 인원수		예측 인원수	가입 인원수		예측 인원수	가입 인원수	
계	856,167	871,773	15,606	906,551	895,077	△11,474	939,653	917,512	△22,141
유치원	61,618	61,707	89	67,983	65,461	△2,522	74,622	68,560	△6,061
초등학교	387,019	381,507	△5,512	399,042	392,835	△6,207	409,676	399,541	△10,135
중학교	204,471	199,167	△5,304	210,575	205,686	△4,889	208,649	209,007	358
고등학교	197,057	212,587	15,530	217,770	213,460	△4,310	233,188	222,644	△10,544
기타학교	4,530	15,340	10,810	9,733	16,156	6,423	13,519	16,719	3,200
배움터지킴이	1,472	1,465	△7	1,448	1,479	31	0	1,041	1,041

○ 한편 소방사업 수익금 수납액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5억원으로 이는 소방수익사업에서 기금으로 5억원을 전출하였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소방수익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소방수입금(28억 5천 9백만원)은 2022년(24억 5천 9백만원) 대비 16.3%%(4억원) 증가하였고 소방수익사업에서의 2023년 기금으로의 전출금은 2022년(1억 6천만원) 대비 212.5%(3억 4천만원) 증액된 5억원으로, 과거 누적수익금을 일괄 전출하여 대폭 증가된 예외적인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소방수익사업 재정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방사업 수익 증대에 따른 기금으로의 적정한 전출이 이루어져 동 기금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19] 소방수익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항 목	2023년도	2022년도	
수입	수수료	2,032	1,841	
	이자수입	11	6	
	기타수입	0	0	
	전기이월금	816	612	
	합계	2,859	2,459	
지출	사업비	인건비	1,203	1,063
		운영비	470	420
	전출금		500	160
	차기이월금		686	816
	합계		2,859	2,459

### 3) 지출결산

- 동 기금의 지출액은 지출계획현액(158억 2천 6백만원) 대비 2천 7백만원(0.2%) 감액된 157억 9천 9백만원임.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차기이월금 35억 3천 2백만원을 제외한 2023년도 지출액은 122억 6천 7백만원으로, 공제사업비 101억 7천 2백만원, 예방사업비 1억 1천 6백만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비 1천 1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 3억 1천 1백만원, 인건비 14억 5천만원, 업무추진비 2천 3백만원, 운영비 1억 8천 4백만원 등으로, 전년도 공제사업비(68억 9천만원)에 비해 금년도 공제사업비(101억 7천 2백만원)가 크게 증가함.

[표-20]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		지출 계 획 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이월액	2022년도 결산액	
합 계		14,702	15,826	15,799	99.8	0	15,827	
비용 자 성 사 업 비	공 제 사 업 비	소 계	8,340	10,189	10,172	99.8	0	6,891
		공 제 급 여 ( 사 고 보 상 비 )	7,859	9,819	9,817	99.9	0	6,599
		전 문 가 위 탁	40	25	20	80.0	0	32
		보 상 심 사 위 원 회	17	17	10	58.8	0	6
		소 송 업 무	215	215	212	98.6	0	194
		손해방지 및 긴급조치 비 용 지 원	26	0	0	0	0	0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의 운영 개선 및 안정화	123	53	53	100.0	0	0
		중 앙 회 분 담 금	60	60	60	100.0	0	60
	예 방 사 업 비	386	171	116	67.8	0	201	
	학 교 안 전 사 고 피 해 자 상 담 지 원	27	27	11	40.7	0	17	
학 교 폭 력 피 해 지 원	266	384	311	80.9	0	184		
인 력 운 영 비	인 건 비	보 수	950	1,257	1,190	94.6	0	778
		수 당	221	187	179	95.7	0	160
		4 대 보 험	101	81	81	100.0	0	82
기 본 경 비	업 무 추 진 비	24	24	23	95.8	0	9	
	운 영 비	249	195	184	94.3	0	194	
차 기 이 월 금		4,138	3,311	3,532	106.6	0	7,311	

가. 공제사업비

- 공제사업비 중 공제급여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계획현액(98억 1천 9백만원) 대비 99.9%인 98억 1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공제급여의 총 지급건수는 20,006건으로 전년도 지급건수(13,106건) 대비 52.6%(6,900건)가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98억 1천 7

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65억 9천 9백만원) 대비 48.8%(32억 1천 8백만원)가 증가하였음.

- 이는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의 지급건수 및 지출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요양급여의 지급건수는 19,969건으로 전년도 지급건수(13,065건) 대비 52.8%(6,904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65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44억 8천 4백만원) 대비 45.0%(20억 2천만원) 증가하였음.
- 그 외 장해급여의 경우 지급건수는 36건으로 전년도 지급건수(39건) 대비 7.7%(3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27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20억 3천 5백만원) 대비 33.6%(6억 8천 4백만원) 증가하였음. 한편 간병급여와 위로금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유족급여는 1건(5억 9천 4백만원)이 새롭게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이 현재 공제료 지출액은 대부분 요양급여에서 지출되고 있는 바, 이는 코로나 이후 등교 수업의 확대에 따른 사고 발생 증가와 일부 비급여 항목의 지급확대가 이루어 짐에 따른 것임.
- 이처럼 요양급여의 확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는 공제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나 요양급여의 확대는 기금의 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보상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공제료 운용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21] 공제급여 종류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23		2022		증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006	9,817	13,106	6,599	6,900	3,218
요양급여	19,969	6,504	13,065	4,484	6,904	2,020
장해급여 <sup>14)</sup>	36(23)	2,719	39(24)	2,035	△3	684
간병급여	0	0	0	0	0	0
유족급여 (장의비)	1	594	0	0	1	594
기타(위로금)	0	0	2	80	△2	△80

[표-22] 공제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 계획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지출액 증감	2022년 결산액
합계		8,340	10,189	10,172	100	17	6,891
공제급여	소 계	7,859	9,819	9,817	100	2	6,599
	요양급여	4,959	6,506	6,504	100	2	4,484
	장해급여	2,244	2,719	2,719	100	0	2,035
	간병급여	16	0	0	0	0	0
	유족급여	600	594	594	100	0	0
	위로금	40	0	0	0	0	80
전문가위탁	운영비	40	25	20	81	5	32
보상심사 위원회	소 계	17	17	10	60	7	6
	운영비	15	15	9	59	6	6
	업무추진비	2	2	1	42	1	0
소송업무	운영비	215	215	212	99	3	194

14)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 한해 비용지급이 가능하므로, 소송 중 사건의 경우 청구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 계획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지출액 증감	2022년 결산액
손해방지 및 긴급조치 비용	소 계	26	0	0	0	0	0
	보전금	9	0	0	0	0	0
	운영비	17	0	0	0	0	0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의 운영 개선 및 안정화	운영비	123	53	53	100	0	0
중앙회분담금	운영비	60	60	60	100	0	60

## 나.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는 지출계획현액 2천 7백만원 대비 40.7%인 1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음.
- 동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2023년 상담 및 심리지원 실적은 총 44건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과도한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

### [표-23]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지원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2023	6	26,980	10,864	16,116	59.7
2022	17	25,980	17,000	8,980	34.5
2021	21	27,980	16,276	11,704	41.8

- 더욱이 202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은 그 실적이 6건(1천 1백만원)에 불과하여 불용률이 59.7%에 달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과 공제회는 법적으로<sup>15)</sup> 상담지원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동 사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그동안의 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